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04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미숙	6205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미숙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숙은 '13.5.23.~'13.12.24. 기간 중 ㈜영진에셋 및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오행금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80220 / 2017-04-21 13:4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명선	'13.4.22.~'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7년 5월 12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80220 / 2017-04-21 13:4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